



# 대금e바로시스템 계좌개설 변경사항 안내

대금e바로는 'explorer 11'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

2018. 6.

도시기반시설본부  
건설총괄부

# 대금e바로시스템 계좌개설 방법 변경 안내

계좌개설과 관련한 사용자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‘전자이체’와 ‘B2B’로 이원화된 계좌를 ‘전자이체’로 단일화하는 바, 상세사항을 안내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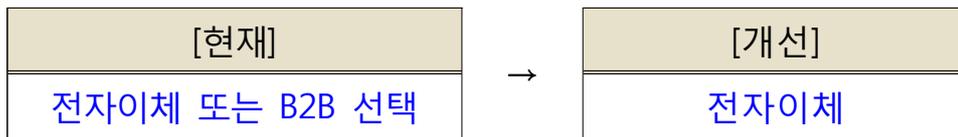
## I 추진 개요

관련문서 : 대금e바로 계좌개설 간소화 추진계획(‘18. 2, 본부장 방침)

대상공사 : ‘18년 6월 1일 이후 계약(차수계약 포함), 계좌변경 공사

개선사항

원·하도급사의 대금e바로용 계좌 종류를 ‘전자이체’계좌로 단일화하여 복잡한 계좌개설 절차를 간소화



추진효과

○ 원·하도급사가 계약별 계좌개설을 위해 은행방문하는 불편 해소

○ 장비·자재·노무비 지급을 위한 타은행 이체수수료(건당 500원) 절감

○ 하도급사의 거래은행 선택 가능

## II 현황 및 불편사항

B2B 계좌개설을 위한 절차와 조건이 많아 복잡하고, 고객센터 문의, 은행방문으로 필요시간이 많이 걸려 불편

○ 계약 시마다 원·하도급사가 계좌개설을 위해 은행방문

○ 계좌종류와 은행에 따라 선택사항이 달라져 고객센터 상담 필요

○ 하도급사는 은행과 이체 방식에 대한 선택권 없이 원도급사와 동일한 은행 계좌 개설 및 이체방식 유지 필요

예) 원도가 “국민은행의 B2B계좌” 운영 시 모든 하도급사가 동일하게 ‘국민은행 계좌 개설 및 B2B 이체방식’ 선택

◆ **계좌 비교 : B2B와 전자이체 (붙임 참조)**

구 분		계좌종류	B2B <sup>1)</sup>	전자이체 <sup>2)</sup>
서비스 기간			'11년 ~ 현재	'15년 ~ 현재
주요기능			대금수령, 전자이체,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	대금수령, 전자이체
대상은행			우리, 국민, 농협, 기업	우리, 국민, 농협, 기업, 신한, KEB하나, 씨티은행, 우체국, 새마을금고
업체 사항	계약간 계좌 공동활용 여부		제한적으로 가능	<b>공동활용 가능</b>
	은행방문		계약 시 마다	<b>최초 1회</b>
	타은행 이체수수료		<b>있음 (건당 500원)</b>	<b>없음</b>
	하도급사 은행 선택		제 한 (원도급사 선택사항 수용)	<b>은행 자유선택</b>

**B2B계좌를 활용한 대출건이 매우 적음**

○ '16년 6건, '17년 0건, '18년 0건

1) B2B(Business to Business) 계좌 :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이체기능 가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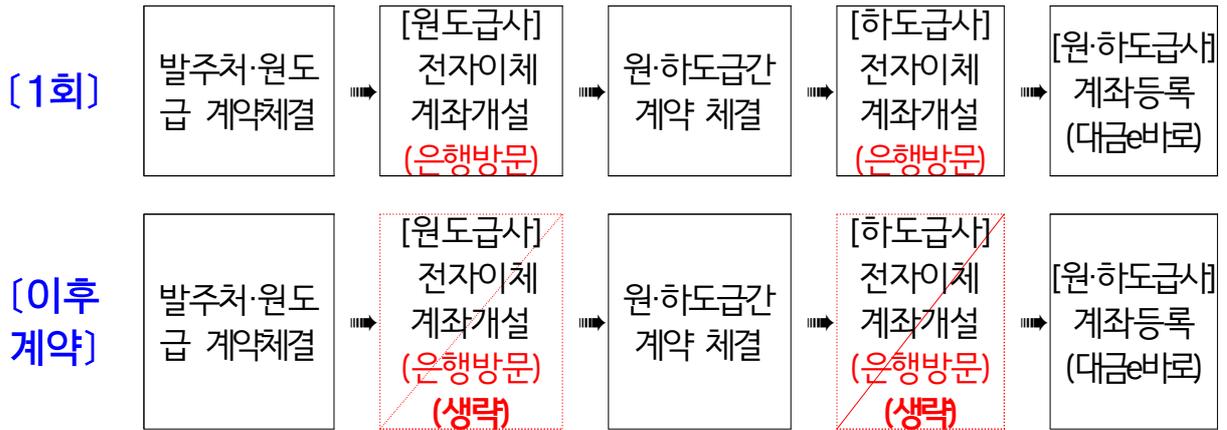
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어음이나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하도급사가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이며, 원도급사는 대출대상이 아님.

대금e바로 내에서 하도사 대출청구 - 원도승인 - 은행대출 - 하도사 기성금지급 시 자동상환됨.

2) 전자이체 계좌 : 계좌간 이체(지급)기능만 가지며, 대출기능은 없음

### III 개선방안 : '전자이체' 계좌만 활용

- 전자이체 계좌 1회 개설 후 발주기관(대금e바로 내)과 무관하게 은행방문 없이 계약간 계좌 공동활용



### IV 시공사 조치사항

- '18년 6월 이후 신규 계약의 경우
  - 1회만 은행방문하여 '전자이체' 계좌 신규개설 후 대금e바로 내 등록·활용, 이후 신규계약 공동 활용
- 전자이체계좌 활용하는 다년도 공사이며, '18년 6월 이후에 차수계약하는 경우
  - 별도의 변경사항 없이 기존 전자이체 계좌를 대금e바로 내 등록 후 활용
- B2B계좌 활용하는 다년도 공사이며, '18년 6월 이후에 차수계약하는 경우
  - 차수 계약 시 전자이체 계좌 신규 개설(은행방문)
    - 원·하도급사 모두 해당
  - 원·하도급사간 계약서, 직적지급합의서, 직불합의서 등에 대금 지급계좌가 명시된 경우 변경 필요

### V 추진일정

- 계좌개설 단일화 실무반영 : '18. 6월 1일 ~ 계속
  - '18. 6. 이후 계약건(차수계약 포함)부터 적용

<붙임>

## 대금e바로 계좌 상세비교

거래종류	B2B(외상매출채권대출) 계좌	전자이체 계좌
기능	현금이체 + 외상매출채권대출	현금이체
이체 수수료	타행 이체수수료(500원) <b>지불</b>	타행 이체수수료(500원) <b>면제</b>
건설사의 은행 선택	○원·하도급사간 반드시 동일은행 이용 ○하도급사 은행 선택권 없음	○원·하도급사간 다른은행 선택가능 ○하도급사 은행 선택 가능
계좌 개설	<p>○<b>우리은행, 농협은행 &lt;원도급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발주기관 상이 : 은행방문</li> <li>- 발주기관 동일 : 우리 은행방문, 농협 은행방문 불필요</li> </ul> <p>○<b>우리은행, 농협은행 &lt;하도급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발주기관 상이 &amp; 원도급 동일 : 은행방문</li> <li>- 발주기관 상이 &amp; 원도급 상이 : 은행방문(동일·별도계좌선택)</li> <li>- 발주기관 동일 &amp; 원도급 상이 : 은행방문(동일계좌만 가능)</li> <li>- 발주기관 동일 &amp; 원도급 동일 : 은행방문 불필요</li> </ul> <p>○<b>국민은행, 기업은행 &lt;원도급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발주기관 상이 : 은행방문 (동일계좌만 가능 공사별 별도계좌 불가)</li> <li>- 발주기관 동일 : 은행방문 안하고 동일계좌 등록(별도계좌불가)</li> </ul> <p>○<b>국민은행, 기업은행 &lt;하도급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발주기관 상이 : 은행방문·등록</li> <li>- 발주기관 동일 : 은행방문안하고 동일계좌 등록</li> </ul>	<p>○ <b>9개 은행 절차 동일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처음 계좌개설 시 은행방문</li> <li>- 공사간 계좌 공동사용 가능 (은행방문 불필요)</li> </ul>
필요서류	○ 여신약정 관련서류와 동일 (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임대차 계약서,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, 국세/지방세완납증명서, 부가세 표준 증명원, 재무재표 2년(최근) 등)	○법인통장 개설서류와 동일 (사업자등록증, 법인인감증명서, 법인등기부등본, 인감증명서, 법인주주명세서 등)